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예규 제444호(개정 2025.11.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인력"이란 법 제22조제1항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나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자산운용 전문인력"이란 법 제22조제1항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고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3. "교육기관"이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8조제8항에 따라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산운용에 관한 교육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

제3조(교육을 위한 자격 요건)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영 제18조제2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교육

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4조(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의 자격요건)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로서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감정평가 및 부동산 중개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제6조에 따른 부동산관계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5조(부동산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요건)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

른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6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부동산 관련 제도의 수립·운용,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것을 말한다.

1. 부동산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2.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제6조(부동산관계기관 종사자의 자격요건)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

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이하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동산관계회사나 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부동산관련제도의 수립·

운용,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자문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운용·관리 등의 부서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신탁회사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건설회사
4.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도시정책관, 주택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토지정책관, 건설정책국, 공공주택추진단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설립된 지방공사
6. 부동산의 관리업 또는 개발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해 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매년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7. 상근 임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계법인 및 전문 컨설팅기관으로 부동산의 중개·자문 등에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5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

제7조(교육의 이수)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은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장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교육

제8조(교육기관의 범위) ① 자산운용에 관한 교육기관은 부동산·금융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전문교육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금융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 및 같은 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교육·연구기관

2.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및 같은 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교육·연구기관
3.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및 같은 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교육·연구기관
4.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같은 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교육·연구기관
5.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같은 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교육·연구기관
6. 기타 전문성, 교육·연구시설 등이 위 기관들과 동등한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9조(교육과정) ①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사전교육시간은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투자상담사, 금융자산관리사, 재무위험관리사, **증권분석사 또는 리츠투자운용사**의 자격증을 가진 자산운용전문인력의 사전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사전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동산의 투자가치분석, 부동산의 평가, 부동산의 관리·개발 등 부동산 자산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사항
2. 부동산투자회사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3.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조세제도 및 부동산 관련 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4. 기업공개(IPO) 및 공모 제도, 자산유동화 실무, 포트폴리오 관리 등 부동산 관련 증권의 발행·유통 및 자본시장에 관한 사항

- 5. 부동산 자산의 투자·운용의 위험요인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 6.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서의 직업윤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위반사례 등을 통한 관련법령 준수사항

③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보수교육시간은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보수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항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

2. 부동산 시장 투자 여건의 변화 추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영 제18조제3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제2항과 제4항의 교육내용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금융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의 교육시간을 제1항에 따른 사전교육시간 및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할 수 있고,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경우 온라인 교육과목·시간, 대리 수강 방지대책 등의 온라인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① 제8조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비용의 적정성

2. 강사진 구성에 부동산 자산 및 유가증권의 투자·운용에 관한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을 것

3. 자산운용 전문인력 수급상황의 적정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인력의 교육신청 등) ① 교육기관의 자산운용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사전교육 :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표 1에 따른 증빙서류

2. 보수교육 :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및 증빙서

②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발급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교육기관이 발급한 자격증 등 증빙서류의 경우에는 원본 확인절차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서류에 대한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영 제18조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 과정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8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당해 연도 보수교육대상자임을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자문회사에 연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통지를 받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자문회사는 소속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자문회사는 영 제18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수료자 관리) ① 교육기관은 전문인력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수료증을 수여하고, 수료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수료증 및 수료증 발급대장의 양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사전교육 :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2. 보수교육 :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

제13조(교육기관의 의무) ① 교육기관은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 및 보수교육을 실시한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신청 현황, 자격요건 증빙서류 및 사실조회 관련서류
2. 교육수료증 발급대장 사본

② 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 현황 및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5년간 보존하며, 교육수료증 발급대장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이수자 현황 및 자격요건 증빙서류
2. 교육수료증 발급대장 사본

제14조(교육기관 감독 및 지정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교육담당자의 출석요구,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를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

육을 이수하게 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장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관리

제15조(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관리) ①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법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영 제47조의7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협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는 등록된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의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문인력 자격요건 증빙서류(제11조 관련)

☐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법 제22조제1항제1호)

전문인력 요건	적용예/해석/확인서류 등
○ 감정평가·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감정평가 및 부동산중개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규정 제4조제1호)	○ 감정평가사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 공인중개사 : 공제가입사실 확인서
○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부동산관계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규정 제4조제2호)	○ 자격증 사본, 관계기관 경력증명서 * 관계기관 : 별첨1

☐ 부동산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법 제22조제1항제2호)

전문인력 요건	적용예/해석/확인서류 등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부동산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가 부동산 관계기관에서 부동산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규정 제5조) * 부동산 투자·운용 관련업무 : 부동산 관련 제도의 수립·운용,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자문 등의 업무	○ 학위수여증명서 ○ 관계기관 경력증명서 및 당해업무 종사경력증명서 * 관계기관 -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등 제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별첨 1의 자료 첨부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법 제22조제1항제3호)

전문인력 요건	적용예/해석/확인서류 등
○ 부동산관계회사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자문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운용·관리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경력(규정 제6조)	○ 관계기관 경력증명서 및 당해업무 종사경력증명서 ○ 관계기관 증빙서류(별첨 1) * 관계기관 :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등 규정 제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 부동산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부동산 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	○ 관계기관 경력증명서 및 당해업무 종사경력증명서

<p>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p> <p>(영 제18조제2항제2호)</p>	<p>○ 해당기관이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기관이라는 입증 서류</p>
<p>○ 영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기관(또는 회사)에서의 합산한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규정 제6조의 업무와 금융투자상품을 운용하는 업무 중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p>	<p>○ [별표 1]에서 규정하는 해당 자격요건별 증빙서류</p>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 제1항 제3호

(부동산투자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

전문인력 요건	적용예/해석/확인서류 등
<p>○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에 따른 증권운용전문인력</p> <p>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서 집합투자재산(이 법에 따른 신탁 재산을 포함한다.), 투자일임재산,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고유재산(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 및 이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금융기관의 고유재산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운용인력별 운용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고유재산에 한한다.)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 2)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5)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6)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 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 또는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 받은 자 7)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국제금융기구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9) (1)부터 (6)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의 기관 또는 회사 	<p>○ 금융 관계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p> <p>○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재산 또는 기금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고유재산은 1,000억원 이상)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p> <p>○ 금융 관계기관 경력증명서</p> <p>○ 당해업무 종사 경력증명서</p>
<p>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협회가 정하는 증권운용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p>	<p>○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임을 증빙하는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재산 운용경력확인서 ○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 수료증
<p>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협회가 시행하는 투자운용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택 1) ○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증 및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 수료증 ○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증 및 금융투자회사경력증명서(1년 이상) ○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 확인서류 (투자자산운용사)

□ (별첨) 관계기관 증빙서류

기관별	증빙자료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 인가(등록)사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신탁회사	○ 허가(등록)사본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건설회사	○ 상장 증명서
부동산의 관리 또는 개발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해 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매년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 관리 또는 개발업에 대한 매출액이 명확히 분리·표시된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부동산사업 매출액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구분하여 확인 가능 자료 추가 증빙
상근 임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계법인 및 전문컨설팅기관으로 부동산 중개·자문 등에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5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	○ 임직원수 확인가능 자료 ○ 회계법인 : 허가(등록)사본 ○ 컨설팅기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 중개·자문 등 부동산사업의 매출액이 분리·표시된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부동산사업 매출액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구분하여 확인 가능 자료 추가 증빙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사진 (3.5cm×4.5cm)
	생년월일					
	직장명					
	연락처					
	이메일					
	주 소					
희망교육일시						
보유자격증	자격명	발급기관	발급년월일	발급번호	비고	
학력사항	학교명	졸업년도	학위명	학위증 번호	비고	
경력사항	기관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담당업무	비고	

상기 본인은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호에 의한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 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교육기관장 귀하

확인사항	
1.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 이 수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첨부서류	
제출서류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1(전문인력 자격요건 증빙서류) 참조

발급번호 제 호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3. 주 소 :
4. 소 속 :
5. 직위 • 직책 :

위 사람은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사전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장 (인)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 발급대장

[illegible]

자산운용 전문인력 보수교육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사진 (3.5cm×4.5cm)
	생년월일		
	직장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록일			
보수교육 대상범위(택1)	☐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종사 유지)		
	☐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종사 시작)		
사전교육 수료여부	사전교육 수료일		
	수료증 발급번호		
	교육기관명		
보수교육 수료여부	보수교육 수료일		
	수료증 발급번호		
	교육기관명		

상기 본인은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에 의한 자산운용 전문인력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교육기관장 귀하

확 인 사 항	
1.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 이수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서 류	
제출서류	1. 사전교육 또는 보수교육 수료증 사본
	2. 자산운용 전문인력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산운용 전문인력 등록부 사본 등) 또는 교육대상자 통지문

발급번호 제 호

자산운용 전문인력 보수교육 수료증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3. 소 속 :
4. 유효 기 간 :

위 사람은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에 대한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장 (인)

자산운용 전문인력 보수교육 면제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직장명		연 락 처	
	주 소			
	이메일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록일			

준법감시인 근무경력	기관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담당업무

사전교육 수료여부	사전교육 수료일	
	수료증 발급번호	
	교 육 기 관 명	

보수교육 수료여부	보수교육 수료일	
	수료증 발급번호	
	교 육 기 관 명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8조제7항 및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교육기관장 귀하

확 인 서 류	
제출서류	해당 경력확인서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록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등록구분	[] 최초등록			[] 재등록(등록 이력 : 예) 회사명)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록요건	보유자격증	자격명	발급기관	발급년월일	발급번호	비고
	학력사항 (석사학위 이상)	학교명	졸업년도	학위명	학위증 번호	비고
	경력사항	기관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담당업무	비고
	교육이수사항	교육과정명	교육기관명	교육기간	수료증 번호	수료년월일
		예)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				
		예)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				
예) 자산운용전문인력 보수교육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의
의
의

신청인 ○○○○○회사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최초등록)

- 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 보수교육 수료증은 가장 최근에 이수한 것으로 함

(재등록)

- 자산운용 전문인력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산운용 전문인력 등록부 사본 등) (최근) 1부
-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 또는 보수교육 수료증(최근) 사본 각 1부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구분	변경 전 자산운용전문인력		변경 후 자산운용전문인력		변경사유	
	임원	직원	임원	직원		
성명						
변경내역	☐ 등록			☐ 상실		
변경내역	구분	직위	성명	생년월일	변경일	등록 : 주요경력(3년 이내) 상실 : 상실 전 담당업무
	등록 또는 상실					

우리 회사 소속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변동사항이 있어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회사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 자산운용전문인력 요건 해당 여부 및 상근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상실) 4대보험 상실신고서 등 상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